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

양 기 진*

<차례>

- | | |
|--|--|
| I. 머리말 | 6.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 |
| II.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내용 검토 | 7. 인보험 체계의 손질(제727조, 제730조) |
| 1. 보험자의 설명의무 명시 및 위반시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제638조의3) | 8. 임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제732조 단서 신설) |
| 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신설 | 9. 생명보험에서 보험자 면책사유의 구체화(제732조의2) |
| 3.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 10. 질병보험 규정 신설(제739의2 및 제739조의3 신설) |
| 4.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제682조) | III. 맺음말 |
| 5.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제722조) | |

주제어: 보험계약법, 설명의무,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증보험, 단체보험,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국문초록〉 근래 개정된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은 주로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개정법 제682조제2항),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개정법 제722조제2항)에서처럼 판례로 형성된 법리를 법전에 도입하고 있으며, 나아가 임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금지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던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법은 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규정상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입법화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몇몇 조문의 경우 시행도 되기 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한 논란대상으로 보험대리상 규정(제646조의2) 및 임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및 관련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규정(제732조 단서)이 거론된다. 따라서 개정 보험계약법 시행 전에 이들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4.5.21), 심사개시일(2014.6.7), 게재확정일(2014.6.20).

